

부산시 풍치지구 건축조례

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지구내의 자연풍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도제한) 풍치지구내에서는 영제1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제기하는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

1. 시 장
2. 고 물 상
3. 전염병원, 정신병원, 마약진료소, 장의사, 가족병원
4. 자동차정류소, 자동차매매소, 자동차정비소, 자동차부속품상.
5. 저 탄 장
6. 제재소, 목재판매소, 건재상
7. 양곡가공업소(다만, 제과점을 제외한다)
8. 공 장
9. 철물점, 공구판매점
10. 옥외 작업장을 갖는 건축물
11. 자전거 판매점, 자전거 수리점
12.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.

제 3조(건축물의 규모) ① 풍치지구내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은 각층의 바닥면적이 2,000평방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. 할

제 4조(건폐율등) ①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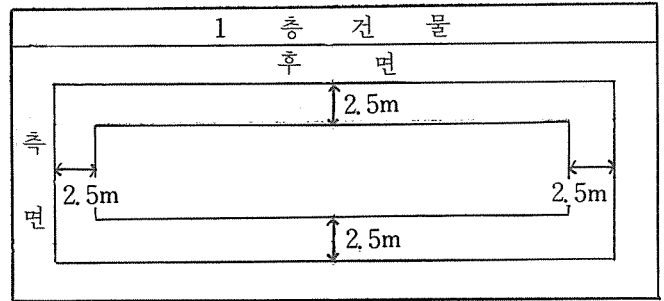
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5조(용적율)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6조(대지면적의 최소한도) 풍치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500평방미터로 한다. 다만, 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.

제 7조(대지안의 공지)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.5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.

구 분	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(m)	양측면 경계선으로부터의거리 (m)	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거리 (m)
1 층 건물	2.5	2.5	2.5



제 8조(건축물의 높이)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관광호텔, 학교, 기념관, 박물관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.

제 9조(기존건축물) 풍치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것(중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영제142조제 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내무부장관의 승인(지기 180-7524, 77, 6, 3)을 얻어 제정한 부산시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부 산 시 장 박 영 수

199 1977년 6월 17일

부산시조례 제 1152호